
Policy and Law Report _Vol.19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10.~7.16.) -

July 17,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 <u>제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5건 심의</u> 환경부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하는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주요 안건으로는 (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지도록 함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을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임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 해소	2023-07-11
중소벤처기업부	• <u>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발표</u>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함.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 진출, 납품대금 제값받기, 제조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 중소·벤처 50+ 비전: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매출 50% 이상, 전체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②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새롭게 도약 ③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상권을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망 확충 ④ 정부·기업·협단체 등 강력한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해결 노력	2023-07-11

부처	내용	일시						
	< 정책 추진방향 > 비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 전략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 세부 추진과제 】 <table><tr><td>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td><td>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td></tr><tr><td> 【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td><td>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td></tr><tr><td>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td><td>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극복) 회복·재기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td></tr></table> < 정책기반 조성 >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정책원팀 구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극복) 회복·재기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함께성장)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위기극복) 회복·재기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마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2일 입법예고함 식의약 규제혁신 2.0 관련 주요 개정 추진 사항은 ▲ 의약품·의약품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 표시 방법·기준 등 규정* ▲ GMP 적합판정 변경 대상 체계 개선**임 *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8번 과제 **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68번 과제 이외 주요 개정 내용은 ▲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 등이 있음	2023-07-12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약품 용기·포장)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 표시,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등 ② (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 제공, 바코드 테두리는 양각(촉각) 돌기로 표시 ③ (의약외품 용기·포장)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인식하여 음성·수어영상 제공, 제품명을 점자표시(추가 가능) 등													
국무조정실	• 킬러규제 혁신 TF, 킬러규제 Top-15 1차 선정, 신속 개선 추진 정부는 경제단체·민간협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킬러규제 Top-15을 발굴함 제1차 TF(7.5)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킬러규제 혁신TF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들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table><tr><th>분류</th><th>킬러규제명</th></tr><tr><td>입지</td><td>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td></tr><tr><td>진입</td><td>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td></tr><tr><td>신산업</td><td>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td></tr><tr><td>환경</td><td>⑪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td></tr><tr><td>노동</td><td>⑭ 외국인 고용규제 ⑮ 산업안전 규제</td></tr></table>	분류	킬러규제명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환경	⑪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노동	⑭ 외국인 고용규제 ⑮ 산업안전 규제	2023-07-14
분류	킬러규제명													
입지	①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②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진입	④ 금융분야 진입규제 ⑤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⑥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신산업	⑧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⑨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⑩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환경	⑪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노동	⑭ 외국인 고용규제 ⑮ 산업안전 규제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고용 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7.14. 시행)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80조의2 신설, 제115조의4 등)	2023-07-14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12. 시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통지 및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43조제2항)	2023-07-11
금융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10.12. 시행 예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행사방법·절차를 알리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항을 종전의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방문판매·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6조의2 신설, 제21조의2 신설, 제23조제2항, 제66조의2 신설, 제67조의2 신설 등)	2023-07-1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u>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u>」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전 협의·권고 절차 마련 (안 제6조, 제12조, 제27조의2, 제32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시정명령 신설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시정명령→조치”의 단계적 조치 도입) - 위기발생시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한은·정부기관·금융회사 등에 대한 보관·예치·매각 의무 부과 대상을 증권·파생상품까지 확대 - 정부의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 - 정부의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마련 ② 전자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 도입 (안 제9조의2, 제10조, 제27조의2, 제32조) - 전자장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환율정보 공시, 주문 접수·거래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자 인가 관련 근거조항 마련 -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2023-07-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현행과 동일하게 시장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벌칙규정 정비 ※ 의견 제시기간 : 2023/7/12(수)~8/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로 제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안 제7조제8호 신설, 안 제18조제6호) ②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안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제2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7/12(수)~8/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로 제출	2023-07-12
국토 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안 제4조제2항) -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사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2023-07-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 (안 제4조제9항) -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③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 (안 제5조제6항) -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④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 및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⑤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함 (안 제2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7/13(목)~8/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등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3-07-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 등 등록신청자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및 적용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13(목)~8/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 後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 (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 의견 제시기간 : 2023/7/13(목)~8/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	2023-07-13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제출자료와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3-07-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 공포, 2024.7.21. 시행)됨 이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료의약품 등록 제출자료 인정범위 확대 (안 제15조, 제16호 서식) - 원료의약품 등록시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관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조증명서이나 제조증명서에 상응하는 증명자료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자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②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 규정 (안 제28조의2 신설) - 치료목적 사용 승인 대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범위가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절차·제출서류 등 규정을 마련함 ③ GMP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항 규정 (안 제48조의3) - 경미한 변경 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변경적합판정 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정하여 변경적합판정 대상으로 함 ④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등 규정 (안 제71조의2, 제75조의2, 제75조의3 신설)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표시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을 마련함 ⑤ 의약품 불법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71조의3 신설) - 의약품 불법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10(월)~9/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근거 마련, 의료기기 사전 검토 대상 및 범위 확대, 사전 검토 결과를 허가 시 반영 명확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수입 요건면제 대상 명확화, 의료기기 영업 허가 신청 및 신고 시 등록기준지 작성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품질책임자 실제 업무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추가 (안 제3조, 제26조) - 현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여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조·수입 기대 ② 의료기기 허가·인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명확화 (안 제9조, 제20조) - 의료기기 허가·인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전 사전 검토 결과를 허가·인증·승인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의료기기 허가·인증·승인 전 받은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의료기기 허가·인증·승인 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사전 검토결과를 통해 신속한 허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③ “피험자”를 “대상자”로 법률 용어 정비 (안 제20조, 제24조, 별표3, 별표9,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 의료기기법 제10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피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험자”를 “대상자”로 정비하고자 함 ④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 방식 개선, 동의절차 면제 근거 마련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정비 (안 제24조) - 의료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 대상자 동의 절차를 완화할 필요 - 가명정보 처리된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대상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가명처리된 의무기록에 대한 임상시험 참여 동의 절차 완화로 대상자에게 영향 없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법령으로 이관된 “잔여검체” 이용 임상시험의 동의 절차 및 익명화 관련 내용 정비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2023-07-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⑤ 의료기기 사전 검토 대상 · 범위 확대 (안 제25조, 별표10, 별지27·28호) - 현행 사전 검토 대상이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개발 · 희소의료기기 이외에도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검토 대상을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로 확대하며 절차·서식 등을 명확하게 함 - 사전 검토 대상 확대로 사전 검토 활성화 및 본 심사 단축, 빠른 제품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⑥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 간주규정 정비 (안 제26조제6항) - 기준규격 제 · 개정 시 업체가 최신 규격을 제조 및 품질관리에 반영할 준비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 변경 간주규정 정비 ⑦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요건면제 대상 명확화 (안 제32조) -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용, 시험검사용, 임상시험용 등의 의료기기는 수입 시 수입업 허가 등을 면제하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이나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수입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 혼란 발생 및 수입업 허가 등을 위한 비용·시간 소요 -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수입 요건 면제 대상인 것과 같이,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요건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⑧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 근거 마련 (안 제43조) - 소비자 부작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 근거 마련 필요 -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처를 기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소비자를 통한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기대됨 ⑨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공급내역 보고 대상 근거 마련 (안 제54조의2) -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중고의료기기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에 한하여 공급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고,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고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하는 것임 ⑩ 일물규제 설정 (안 제6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일물규제 미설정 건에 대한 일물규제 신규설정 추진 결정('21년 일물규제 심사 결과) ⑪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 8) - 공급내역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기 취급자의 공급내역보고 부담 완화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⑫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 (안 별표 9) - 의약품,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에 비해 의료기기가 과중하여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의약품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 ⑬ 의료기기 영업 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상 등록기준지 삭제 (안 별지 제1호, 제33호, 제36호) - 민원인이 의료기기 영업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및 판매(임대) · 수리업 신고시 등록기준지를 삭제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13(목)~8/2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안 제369조제2항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7/10(월)~8/19(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 제출	2023-07-1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삭제)	2023-07-12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보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2023-07-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안 제20조의2제4항) -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②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 (안 제81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 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2023-07-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2023-07-13
	• 「<u>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동일한 면세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공제율을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은 102분의 2로 낮게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	2023-07-14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023-07-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업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3)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의원 등 11인)」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유통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만으로는 불법정보의 광고·유통 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환수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유통 등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추적·환수를 위한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조) ②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③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④ 불법정보의 광고·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⑤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불법정보가 범죄행위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16조)	2023-07-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4인)」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제공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광고성 정보와 같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하여 구분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2023-07-1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 -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71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2023-07-1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1조의3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023-07-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2023-07-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역할에 주목하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친환경연료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EU는 2025년부터 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조속한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의 목적에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②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와 기타 연료를 구분함 (안 제2조) ③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④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제39조)	2023-07-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폭한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온열·한랭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2023-07-11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35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2023-07-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u>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u>」 내실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되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임 이에 직수입자를 활성화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2023-07-14
환경노동위원회	• 「<u>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u>」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3-07-1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3 신설) ③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49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시간·기간제 고용,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2023-07-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 판례 다수의 의견임. 또한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6조의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즉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오히려 취업 이후 세후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부족하여 구직급여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46조제3항, 제50조제2항 신설 등)	2023-07-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안 제49조제8항) -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안 제53조의4 신설) -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53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23-07-1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0인)」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	2023-07-12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7/18(화) 14:00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안건 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7/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6호 발간 -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7/19(수)	금주의 서평 제637호 발간 - 도서명 : 초거대 위협 - 저자 : 누리엘 루비니	
예산정책처	7/18(화) 14:00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외국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 투자 결정 요인, 투자 애로사항 등	의정관 505호
	7/20(목)	「대한민국 경제」 발간	
	7/20(목) 14:00	‘지방세지출제도’ 개선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정관 417호
입법조사처	7/17(월)	「이슈와 논점」 발간 -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	
미래연구원	7/19(수) 09:30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의원회관 대회의실

[별첨1] 제408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7/17(월) 10:3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및 현안질의
외통위	7/21(금) 10:00	전체회의	- 통일부장관후보자 김영호 인사청문회
농해수위	7/17(월) 10:00	농림법안소위	- 한우산업 관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
환노위	7/17(월) 10:00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7/17(월) 14:00	고용노동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7/17(월) 14:00	전체회의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보고
첨단전략산업특위	7/18(화) 10: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인사청문특위	7/17(월) 13:30	전체회의	-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7(월) 10:00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성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7(월) 10:20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 -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7(월) 14:00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박범계·조승래·박영순· 이상민·장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7(월) 14:00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위성곤·김희곤·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8(화) 08:00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 제5회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처	한중의원연맹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8(화) 10:00	신냉전시대 경제·무역전략 토론회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8(화) 14:00	'AI 기술 활용' 기후예측 및 대응을 위한 토론회	홍석준·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9(수) 14:00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방안	권철승 의원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7/20(목) 10:00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의원회관 4간담회실
7/20(목) 14:00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1(금) 14: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 -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및 해외 법제 사례	이용호·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1(금) 14:00	한반도정세 연속토론회 6차 - 정전 70년의 한반도, 성찰과 미래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9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12(수)	<u>금주의 서평 제636호 발간</u> - 도서명 :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 저자:조연하	
	7/12(수)	<u>「World&Law」 제2023-14호 발간</u> -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 관철을까?	
	7/13(목)	<u>「현안, 외국에선」 제62호 발간</u> -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입법조사처	7/11(화)	<u>「NARS Brief 제10호」 발간</u> -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7/12(수)	<u>「이슈와 논점 2113호」 발간</u> -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따른 유럽 외교안보 정책 전망	
	7/12(수)	<u>「NARS Brief 제11호」 발간</u>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7/13(목)	<u>「이슈와 논점 2114호」 발간</u> -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7/13(목)	<u>「외국 입법·정책 분석 38호」 발간</u> -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7/14(금)	<u>「이슈와 논점 2115호」 발간</u> -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0(월) 10:30	202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0(월) 14:00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0(월) 14:00	학생 마음 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1(화) 10:00	바이오벤처 투자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 모색	정일영·최재형 의원실, 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1(화) 13:30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서병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1(화) 14:00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1(화) 14:00	2023 반도체정책세미나 - 반도체 판이 바뀐다, K칩 생존 조건은	양향자 의원실, 메트로경제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1(화) 14:00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 개도국에의 시사점	서정숙·이종성 의원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2(수) 1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2(수) 14:00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엄태영·박대수·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